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201280 손해배상(기)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선우, 박종훈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권택수, 김대욱, 김지현, 신혜원, 이재성
변 론 종 결	2025. 11. 25.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원고에게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신탁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 'C' 의류소매업 매장을 상설점 및 대리점,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3.경 아래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갑)와 D(을)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을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자작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음악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 갑과 을간의 권리, 의무 등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캐스팅 :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 서비스를 말한다.
2. 가입자 :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 를 말한다.
3. 매출액 : 을의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을이 이용하는 ‘관리저작물’ 중, 갑이 관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갑의 관리비율은 97%로 본다.

...

제3조 (사용허락의 범위)

- ① 갑의 을에 대한 사용허락 범위는 “관리저작물” 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음악 서비스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 서비스지역 : 대한민국
 - 서비스명칭 : D (매장음악)
 - 서비스위치 : (인터넷주소 1 생략)
- ② 을은 “관리저작물” 을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갑의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정산시스템 연동 및 정산자료의 제공)



...

- ② 음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등을 위해 같이 요구하는 매출액, 가입자 수 및 음악저작물 사용목록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 ① “징수규정”에 의거 매장음악 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제27조 (웹캐스팅)

- ①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800원 x 가입자 수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다. D와 피고의 매장음악서비스 계약

1) 피고는 D와 사이에, D가 매장음악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피고가 요청한 선곡기준 등에 따라 매장 분위기, 계절, 시간 등에 부합되는 매장음악을 편성하여 피고 매장으로 공중송신하고, 피고는 D에 매장당 매월 일정액의 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장음악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는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위 서비스를 신청한 피고 매장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공중송신해 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 제5조에 따라 매월 가입자 수¹⁾ 및 매출액이 포함된 정산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

1) 매장음악서비스를 신청한 피고 매장의 수를 말한다.



왔다. D가 2012. 7.부터 2016. 9.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피고 매장의 누적수는 2,076개에 이른다.

3) 피고 매장의 운영자들은 D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공중송신해 주는 매장음악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피고는 피고 매장이 사용한 매장음악 이용내역에 따라 그 이용료를 D에 정산해 주었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원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공연권 침해에 따른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8. 5. 23.경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갑 제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7조).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여기서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제2조 제5호).²⁾

2)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에는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해석상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2)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는 피고 매장에서 D가 제공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재생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즉 '공연'에 해당한다. 피고나 피고 매장의 운영자가 원고로부터 이러한 공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바 없는 이상 쟁점 기간 동안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피고 매장이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에 따라 이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개별 피고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공연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피고의 어느 매장에서 어떤 음원을 재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 매장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D와 이 사건 매장 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 중 영업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장에서 이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공개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가 피고 매장에서 D로부터 제공받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영업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반증은 없다. 또한 원고는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받아 자기의 명의로 재판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공연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재생된 음원의 개수나 그 재생횟수가 아닌 공연이 이루어진 매장 수와 추정되는 평균 면적, 포



괄적인 월 단위의 사용료 상당액, 징수권한 행사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개별 매장에서 개별 음원의 재생에 따른 공연권 침해행위의 특정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고 매장에서 쟁점 기간 동안의 공연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피고 매장에서 매장음악을 공연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매장의 운영자들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 점, 피고는 이러한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에 따라 피고 매장들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점, 피고가 피고 매장이 사용한 매장음악 이용내역에 따라 그 이용료를 D에 직접 정산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장음악의 공연 주체를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묵시적 이용허락 주장

원고는 D와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D로부터 음원을 전송받는 가맹점의 점포에서 공연되는 것 외의 다른 서비스를 상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D로부터 사용내역은 물론 매장 수, 월 사용료 등 구체적인 항목까지 모두 보고 받았으므로, 피고 매장에서 D로부터 전송받은 음악저작물이 공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장음악서비스'는 당연히 매장에서 공연되는 것을 전제로 오로지 매장에서 공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료를 납부 받았으므로, 피고 매장에서의 공연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나) 소멸시효 항변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D가 원고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용료를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 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정산 시기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주장

원고는 공연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외관과 신뢰를 형성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묵시적 이용허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공중송신'과 '공연'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웹캐스팅은 '공중송신'의 일종에 해당하고, '공연'과는 다르다. 저작물을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과 '웹캐스팅'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이용 방법에 해당하므로 D가 원고로부터 공중송신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매장에서 D로부터 전송받은 음악저작물이 공연되고 있음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공연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공연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 766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D와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분기별 또는 매월 정산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 정산자료에는 월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피고 매장의 수와 그로 인한 매출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받는 피고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청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음원이 재생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해당 월이 속한 분기말에는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쟁점 기간(2012. 7. ~ 2016. 9.) 동안 이루어진 공연권 침해에 관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2020. 1. 8.)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D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원고에게 정산, 지급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에 따른 웹캐스팅 방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채무인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 매장에서 이용허락 없이 이루어진 공연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별개의 채무이다. 여기에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 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없이 공연이 이루어짐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바,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 매 장음악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공연행위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하고 공연사용료를 수령해 오는 등 공연사용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계속하면서 원고의 징수규정 개정 노력과 함께 공연권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른바 대법원의 'F마트 판결' 이후 종래의 유권해석을 바로잡는 내용을 밝히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연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저작권법상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반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2012. 7.경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2012년 징수규정 개정안'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매장의 각 영업허가면적별로 해당 면적 기준의 월정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공연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매장의 해당 면적을 2012년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면적 구분 최소 면적 단위인 300㎡ 미만으로 가정하여 적어도 매장당 월 20,000원의 공연사용료 상당액을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기간 동안 공연권의 행사로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공연사용료 상당액 합계 36,200,000원(= 2012. 7.부터 2016. 9.까지 피고 매장 월별 합계 1,810개 × 월 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년 징수규정 개정안 기준금액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 정액(원)
1	300㎡ 미만	20,000
2	300㎡ 이상 600㎡ 미만	30,000
3	600㎡ 이상 1,000㎡ 미만	40,000



4	1,000㎡ 이상 1,500㎡ 미만	50,000
5	1,500㎡ 이상 2,000㎡ 미만	60,000
6	2,000㎡ 이상 3,000㎡ 미만	70,000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매장당 월 2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하 '통상의 이용대가'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저작권법 제105조는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5항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³⁾

이는 국내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고 등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종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고 한다)은 제12조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에 관하여는 영업장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 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2012. 7.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하여도 공연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제12조의 1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편의점'도 포함시키

3) 현행 저작권법은 같은 조 제9항에서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위 2012년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반려되었다.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조항의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29조 제2항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즉, 공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위 시행령 제11조가 2017. 8. 22. 대통령령 제28251호로 개정되면서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 장소'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커피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을 영위하는 영업소(제1호 가목),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같은 호 나목), 체력단련장(제3호 나목) 등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추가된 곳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2017년 징수규정 개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7. 11. 22. 문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위 장관은 2018. 3. 23.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수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8구합67930 판결 등).

2017년 징수규정 개정안 중 수정, 승인된 부분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50㎡ 이상 100㎡ 미만	2,000
2	100㎡ 이상 200㎡ 미만	3,600
3	200㎡ 이상 300㎡ 미만	4,900
4	300㎡ 이상 500㎡ 미만	6,200
5	500㎡ 이상 1,000㎡ 미만	7,800
6	1,000㎡ 이상	10,000

③ 현행 징수규정에 의류 업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 피고 매장의 경우 의류판매 매장으로,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비율도 매우 협소하다. 즉 허락 없이 고객 등을 상대로 음악저작물이 재생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정도, 즉 공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⑤ 이 사건에서 피고 매장의 직영점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피고 매장의 대리점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는 그 공연으로 인한 이익 전부가 피고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매장에서 음악서비스를 대리점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의 유치나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으로 인한 통상의 이용대가는 2017년 수정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피고 매장의 면적별 기준금액(피고 매장명과 유통형태, 매장면적, 매장면적별 월 공연사용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의류판매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과 쟁점 기간 동안 피고 매장에서 공연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의 관리저작물이 아닌 경우를 공제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 매장의 대리점의 경우 피고가 공연으로 인한 이익 전체를 향유하지 못하는 점 등을 다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① 2017년 수정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쟁점 기간 동안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한 피고 매장의 면적별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연사용료는 합계 10,384,100원⁴⁾이다(피고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특수매장의 경우 매장이 개별적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연사용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해있는 피고 매장의 경우에도 매장별로 별도로 음악재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여기에 의류판매점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원고 저작물의 비율, 피고 매장 대리점의 공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다시 80%를 감액한 2,076,820원(= 10,384,100원 × 20%)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허락 없이 쟁점 기간 동안 피고 매장에서 원고의 관리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2,0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4) 백화점에 입점한 'E김해점'의 경우, 관련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면적을 다른 백화점 입점 업체들의 평균값으로 보아 그 면적 및 그에 대한 월 공연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총 공연사용료 10,384,100원(= 2012년 1,660,800원 + 2013년 1,780,000원 + 2014년 2,086,700원 + 2015년 1,971,700원 + 2016년 2,884,900원)의 구체적 계산식은 피고가 제출한 2025. 12. 8.자 참고서면 첨부 서류를 참조하였다.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별지

2012. 7.~ 2016. 9. (쟁점 기간)		매장평수		면적별 공연 사용료
매장명	유형구분	평	m ²	
	직영점	20.9	69	2,000
	직영점	33.7	111	3,600
	직영점	34.1	113	3,600
	직영점	50	165	3,600
	직영점	58.2	192	3,600
	직영점	68.9	227	4,900
	직영점	70	231	4,900
	직영점	70	231	4,900
	직영점	90	297	4,900
	직영점	91	300	6,200
	직영점	248.4	820	7,800
	직영점	257.2	849	7,800
	직영점	302.5	998	7,800
	쇼핑몰	47.9	158	3,600
	쇼핑몰	85	281	4,900
	쇼핑몰	51	168	3,600
	쇼핑몰	145	479	6,200
	쇼핑몰	54	178	3,600
	쇼핑몰	86.26	285	4,900
	쇼핑몰	74.5	246	4,900
	쇼핑몰	58	191	3,600
	상설점	33.6	111	3,600
	상설점	38.4	127	3,600
	상설점	40	132	3,600
	상설점	55.1	182	3,600
	상설점	60	198	3,600
	상설점	73.9	244	4,900
	상설점	80	264	4,900
	상설점	197	650	7,800
	백화점	26.8	88	2,000
	백화점	25.21	83	2,000
	백화점	20	66	2,000
	백화점	30.1	99	2,000
	백화점	38.7	128	3,600
	백화점	20	66	2,000
	대리점	25.5	84	2,000
	대리점	31.8	105	3,600
	대리점	32	106	3,600
	대리점	32.5	107	3,600
	대리점	32.7	108	3,600
	대리점	33.3	110	3,600
	대리점	33.5	111	3,600
	대리점	33.6	111	3,600
	대리점	34.6	114	3,600
	대리점	35	116	3,600
	대리점	36.7	121	3,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2012. 7.~ 2016. 9. (쟁점 기간)		매장평수		면적별 공연 사용료
매장명	유통구분	평	m ²	
	대리점	36.7	121	3,600
	대리점	37	122	3,600
	대리점	38	125	3,600
	대리점	38	125	3,600
	대리점	38.1	126	3,600
	대리점	38.3	126	3,600
	대리점	38.5	127	3,600
	대리점	40	132	3,600
	대리점	40	132	3,600
	대리점	40	132	3,600
	대리점	40	132	3,600
	대리점	40.1	132	3,600
	대리점	40.1	132	3,600
	대리점	40.1	132	3,600
	대리점	40.5	134	3,600
	대리점	40.5	134	3,600
	대리점	41	135	3,600
	대리점	41.5	137	3,600
	대리점	41.5	137	3,600
	대리점	41.6	137	3,600
	대리점	42	139	3,600
	대리점	42.1	139	3,600
	대리점	43	142	3,600
	대리점	43	142	3,600
	대리점	43	142	3,600
	대리점	43	142	3,600
	대리점	43	142	3,600
	대리점	43.6	144	3,600
	대리점	43.9	145	3,600
	대리점	45	149	3,600
	대리점	45	149	3,600
	대리점	45	149	3,600
	대리점	45	149	3,600
	대리점	45.5	150	3,600
	대리점	45.8	151	3,600
	대리점	46	152	3,600
	대리점	46	152	3,600
	대리점	46	152	3,600
	대리점	46.1	152	3,600
	대리점	46.4	153	3,600
	대리점	47	155	3,600
	대리점	47.3	156	3,600
	대리점	48	158	3,600
	대리점	48.1	159	3,600
	대리점	49	162	3,600
	대리점	49	162	3,600
	대리점	49.1	162	3,600
	대리점	50	165	3,600
	대리점	50	165	3,600
	대리점	50	165	3,600
	대리점	50.9	168	3,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2012. 7.~ 2016. 9. (쟁점 기간)		매장평수		면적별 공연 사용료
매장명	유통구분	평	m ²	
	대리점	52.4	173	3,600
	대리점	53.3	176	3,600
	대리점	53.9	178	3,600
	대리점	53.9	178	3,600
	대리점	54	178	3,600
	대리점	54	178	3,600
	대리점	54.1	179	3,600
	대리점	54.1	179	3,600
	대리점	54.9	181	3,600
	대리점	55.1	182	3,600
	대리점	57	188	3,600
	대리점	57.5	190	3,600
	대리점	57.8	191	3,600
	대리점	58	191	3,600
	대리점	58.3	192	3,600
	대리점	58.6	193	3,600
	대리점	60	198	3,600
	대리점	60	198	3,600
	대리점	60	198	3,600
	대리점	60	198	3,600
	대리점	60	198	3,600
	대리점	60.3	199	3,600
	대리점	60.4	199	3,600
	대리점	60.9	201	4,900
	대리점	61.6	203	4,900
	대리점	62.1	205	4,900
	대리점	62.1	205	4,900
	대리점	63.9	211	4,900
	대리점	64.5	213	4,900
	대리점	65	215	4,900
	대리점	65.1	215	4,900
	대리점	66	218	4,900
	대리점	69.3	229	4,900
	대리점	70	231	4,900
	대리점	70	231	4,900
	대리점	70	231	4,900
	대리점	72.1	238	4,900
	대리점	72.1	238	4,900
	대리점	75.2	248	4,900
	대리점	75.3	248	4,900
	대리점	77.6	256	4,900
	대리점	79	261	4,900
	대리점	80.2	265	4,900
	대리점	80.2	265	4,900
	대리점	80.3	265	4,900
	대리점	81	267	4,900
	대리점	84	277	4,900
	대리점	85	281	4,900
	대리점	87	287	4,900
	대리점	88	290	4,9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2012. 7.~ 2016. 9. (쟁점 기간)		매장평수		면적별 공연 사용료
매장명	유통구분	평	m ²	
	대리점	88.1	291	4,900
	대리점	94	310	6,200
	대리점	95.4	315	6,200
	대리점	95.7	316	6,200
	대리점	97.9	323	6,200
	대리점	100	330	6,200
	대리점	100.2	331	6,200
	대리점	100.2	331	6,200
	대리점	101.8	336	6,200
	대리점	103.8	343	6,200
	대리점	106.2	350	6,200
	대리점	108.4	358	6,200
	대리점	109	360	6,200
	대리점	111	366	6,200
	대리점	115.2	380	6,200
	대리점	118	389	6,200
	대리점	119.3	394	6,200
	대리점	120	396	6,200
	대리점	120	396	6,200
	대리점	120	396	6,200
	대리점	120.2	397	6,200
	대리점	122.2	403	6,200
	대리점	122.2	403	6,200
	대리점	123	406	6,200
	대리점	130	429	6,200
	대리점	131	432	6,200
	대리점	133.9	442	6,200
	대리점	135	446	6,200
	대리점	140.1	462	6,200
	대리점	140.2	463	6,200
	대리점	140.2	463	6,200
	대리점	147.3	486	6,200
	대리점	150.2	496	6,200
	대리점	150.9	498	6,200
	대리점	153	505	7,800
	대리점	184.2	608	7,800
	대리점	190	627	7,800
	대리점	240	792	7,800